

제 1241 호
1986. 1. 2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포원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소
전화 : 735-3337

지	보도국장	공보국장	공보관	공 보 관 인 감

시 보

차 례

- ◎ 조 례
제 2067 호 :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3
- ◎ 규 칙
제 2130 호 :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..... 4
- ◎ 고 시
제 60 호 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 4
제 61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 5
제 62 호 : 도시계획사업(하수도)실시계획인가 13

(이면계속)

공											
보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공 고	
제 50 호 : 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 시행허가에 따른서류공람	13
◎ 사 령	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 1. 29.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67 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중 "도로계획법 제 65 조"를 삭제한다.

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중 "폭 20 미터미만"을 "폭 30미터이하"로 하고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5. 토지의 자연상승치라 함은 공사시행 공고일로부터 부과시의 토지가액 조사완료 기간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과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가액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.

제 4 조 중 "3분의 1"을 "4분의 1"로 "4분의 1"을 "5분의 1"로 한다.

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중 "3배"를"1

배"로 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3. 기존도로에 접한 하천을 복개한 때에는 복개된측은 제 1 호에 의하고 기존도로측은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부과구역으로 한다.

제 5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중 "3배"를 "1배"로, 제 2 호 중 "20 미터이상"을 "30 미터초과"로 하고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도로의 측면만을 확장한 때에는 확장된 측은 제 1 호에 의하고 기존도로측은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부과구역으로 한다.

제 8 조 제 2 항 중 "4구역"을 "2구역"으로 하고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 3 호 및 제 4 호를 삭제한다.

2. 도로양측 경계선으로부터 부과구역중 제 1 호의 토지를 제외한구역

제 11 조 중 제 4 호를 삭제한다.

제 17 조의 2 제 1 항 중 "(출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와 제 4 항 중 "(출장소장)"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1)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)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6. 1. 29.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130 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(구역별 부과비율) 부담금의 구역별 부과비율은 다음과 같다.

1. 조례 제 8 조 제 2 항의 부과구역에 부과총액의 100 분의 70.
2. 조례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의 구역은 제 1 호의 부과비율의 부과총액의 100 분의 30 을 가산

제 4 조중 “전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별 배분액”을 “제 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액”으로하고 제 2 항중 “100 분의 25”를 “100 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중 “(출장소포함, 이하 같다)”를 삭제하고 제 2 호중 “전호”를 “제 1 호”로, 제 2 항중 “국

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34 조의 규정”을 “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제 1 호 나목중 “조례 제 8 조 제 2 항 제 i 호 내지 제 4 호의 구역”을 “조례 제 8 조 제 2 항의 부과구역”으로하고 제 4 호중 “도로의 한편만을 확장한 경우”를 “도로의 한편만을 확장(기존도로에 접한 하천부개포함)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- 1)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)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이전에 이미 부과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 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고시

1.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를 위해 당시 공고 제 758 호('85.12.19)로 서류(공람공고)한 가스공급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와 사업시행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1986. 1. 29.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

구분	강남	동부	북부
위치	강남구 대치동 27-1	성동구 군자동 205-206	도봉구 상계동 711번지, 712번지의 3
비고	서울시고시제 41호 (78.2.11)로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결정. 서울시고시 제 141호 (78.4.7)지적승인	서울시 고시 제 48호 (82.2.3)로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결정 및 지적승인	서울시 고시 제 211호 (84.4.23)로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결정 및 지적승인

나. 사업의 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가스공급설비)

다. 사업시행자 : 한국가스공사
대표 문 회 성

라. 시행면적

- (1) 강남 : 2,402㎡ (건축면적 325.45㎡)
- (2) 동부 : 1,937.3㎡ (건축면적 281.45㎡)
- (3) 북부 : 1,092㎡ (건축면적 121.45㎡)

마. 시행기간 : 허가일 - '86.12.31

바. 위치도및계획평면도 : 별첨 (생략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성명 및 주소 : 별첨

아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,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별첨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시고시 제 386호 (64.9.30)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 마장동 450-65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사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 1. 29.
서울특별시장

소 재 지	면 적 (㎡)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 (497-13)	1.2	근저당, 도선동 새마을금고 근저당, 국민은행
" (497-9)	4.1	
" (497-7)	9.6	
" (497-1)	11.6	
" (479-32)	5.4	
○ 무허가건물		
소 재 지	면 적 (㎡)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성동구 마장동 450-65 (568-11)	54.0	
" (569-2)	21.7	
" "	39	
" "	23	
" (560)	15.4	
" "	26.0	
" (573-2)	37.0	
" (")	35	
" "	42	
" "	38	
" "	10.6	
" (574)	192	
" "	38	
" "	31	
" (573-1)	14.3	
" (574)	16.7	
" "	10.4	
" (566-1)	14.6	
" (566-46)	22.4	
" (566-43)	29	
" (565)	23.5	
" (566-42)	15.4	

14-8 제 1241 호 시

보 1986.1.29.

소 재 지		면 적 (㎡)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성동구	마장동 450-65 (566-41)	10.4	
	" (565)	18.7	
	" "	17.4	
	" "	39	
	" "	23.3	
	" (497-12)	16.6	
	" "	20	
	" (497-12)	21.1	
	" "	59	
	" (497-13)	25.8	
	" (533- 4)	12.6	
	" (497-13)	21.6	
	" (533- 3)	10.3	
	" (497-13)	2.6	
	" "	7.8	
	" "	5.8	
	" (497-12)	8.4	
	" "	26.1	
	" "	10.6	
	" (497-12)	18.7	
	" (497- 1)	26.0	
	" "	14.7	
	" (497-32)	0.8	
	" (479-30)	47	
	" "	8.0	
○ 시공선 보상 (토지)			
소 재 지		면 적 (㎡)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성동구	마장동 568-11	75	
	" 568-10	50	
	" 568- 9	100	
	" 568- 2	75	
	" 565	400	

○ 시공선 보상 (건물)						
소	재	지	면	적	(㎡)	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
성동구	마장동	568-11	70			
"	"	568-10	30			
"	"	568-9	45			
"	"	569-2	35			
"	"	"	30			
"	"	565	9			
"	"	"	6			
"	"	"	16			
"	"	"	12			
"	"	"	8			
"	"	"	40			
"	"	"	20			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						
○ 건물						
소	재	지	소	유	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	마장동	450-65 (568-9)	마장동	568-9	이순호	
"	"	(568-9)	"	4	권승호	
"	"	(569-1	"	569-1	권구선	
"	"	"	"		김원규	
"	"	"	"		이주자	
"	"	"	"		김두하	
"	"	(569-2)	"	569-2	이강운	
"	"	"	"		김준현	
"	"	(560)	"	560	백사기	
"	"	(569-2)	"	569-2	강선규	
"	"	(573-2)	"	573-2	윤성주	
"	"	(573-1)	"	573-1	김홍권	
"	"	(574)	"	574	김재욱	

소 재 지	소 유 자		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 (573-1)	마장동 573-1	최성길	
" (574)	" 574	김재준	
" (566-1)	종로 원남동 51-1	강영혜	
" (566-45)	마장동 566-45	김영부	
" (566-44)	하 왕 982-7	박방춘	
" (566-37)	마장동 566-37	유환웅	
" (497-12)	" 497-12	김광구	
" (497-9)	" 497-9	선병호	
" (497-7)	홍익동 562	이양호	
" (497-1)	" 23	권옥선	
" (497-32)	" 479-32	조병승	
○ 토 지			
소 재 지	소 유 자	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	
성동구마장동 450-65	서울특별시		
○ 무허가 건물			
소 재 지	소 유 자		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 (568-11)	마장 - 568-11	안금선	
" (569-2)	569-2	김종운	
" "	"	김순옥	
" "	"	황경언	
" (560)	" 560	백사기	
" "	"	백사기	
" (573-2)	" 573-2	김무웅	
" "	"	심동섭	
" "	"	이재복	
" "	"	문승분	
" "	"	김유성	
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 (574)	마장동 574 김재준	
" "	" 김재욱	
" "	" 김재욱	
" (573- 1)	" 573-1 심동섭	
" (574)	" 574 김재욱	
" "	" 홍승표	
" (566-1)	" 566-1 강영혜	
" (566-46)	" 566-46 이강석	
" (566-43)	" 566-43 송한규	
" (565)	" 565 박영식	
" (566-42)	" 566-42 최승환	
" 566-41	" 566-41 문길호	
" (565)	" 565 김영식	
" "	" 이원주	
" "	" 박말분	
" "	" 민병엽	
" (497-12)	" 497-12 조성현	
" (497-12)	마장동 497-12 노주환	
" "	" 조성경	
" "	" 함정욱	
" (497-13)	" 497-13 김주란	
" (533- 4)	" " 고경환	
" (497-13)	" 497-13 " "	
" "	" " 고경환	
" "	" " 홍승환	
" "	" " 홍승환	
" (497-13)	" 497-13 박영명	
" (497-12)	" " -12 " "	
" "	" " 안응주	
" "	" " 신양원	
" "	" " 유동세	
" (497-1)	" 497-1 심욱보	
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450-65(497-1)	마장동 497-1 황정희	
" 479-32	" 479-32 조병승	
" 479-30	" 479-30 맹우철	
" "	" 유창선	
○ 시공선보상 (토지)		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568-11	마장동 568-10 오순례외 5인	
" 568-10	" 568-10 오순례외 1인	
" 568-9	" 451-5 송기영외 197인	
" 569-2	" 451-5 "	
" 565	" 451-5 "	
○ 시공선보상 (건물)		
소재지	소유자	토지수용법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
성동구마장동 568-11	마장동 468 심혁로	
" 568-10	" 568-10 오세원	
" 568-9	" 451-5 이재봉	
" 569-2	" 569-2 박동수	
"	" 451-5 김종남	
" 565	" 565 이병규	
"	" 최병숙	
"	" 최영철	
"	" 홍우케	
"	" 조영선의 3	
"	" 서우철	
"	행당동 303-35 배복길	
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토목과 (445-8704)로 문의 바람.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 호

도시계획사업(하수도) 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시고시 제 256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다음 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인다.

1986. 1.2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명 : 방화동 272 의 4-210 의 5 간 하수도공사

나. 사업위치 : 방화동 272 의 4-210 의 5

다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규모) : 도시계획(하수도)

석축H = 2 m L = 1.794 m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마. 사업기간 : '85.2.3-'86.2.28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
사. 인가내용 : 별첨인가조서(도서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0 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공람 공고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644 호 (85.9.27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가스공급설비 시설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행 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 간 공람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료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람.

1986. 1.2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

(1) 강남구방배동산 100-3 일대

(2) 구로구독산동 948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

다. 사업시행자 : 한국가스공사 대표문의성

라. 시행면적			
위 치	강남구방배동산 100-3	구로구독산동 948 일대	
규 모	시행면적 : 3,005.5 m ² 건축면적 : 0 m ² (지하 260.6 m ²)	시행면적 : 3,975.7 m ² 건축면적 : 0 m ² (지하 536.6 m ²)	
마. 시행기간 : 허가일 - '86.12.31 바. 기타 :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연		료과 (전화 731-6316(9)) 에 문의 또는 서면 바람.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사 령</div>			
◎ 1986년 1월 29일		형제 33호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성식	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결정 (85-280호)에 따라 '85.10.19자 감봉1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	강서구보건소장	지 방 의 사
노종식	대법원판결 (85누 738호)에 따라 '84.11.28자 감봉1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	청 소 과 위생설비계장	자 방 화 공 기 과
서울특별시			